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252호

장안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99(2010.11.03)호로 승인된 장안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의 동남권 방사선의 과학 일반산업단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기장군(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2. 6. 27 부산광역시청

I.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가. 명칭 : 장안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
다. 면적 □ 기정 : 1,320,077.2㎡
↳ 변경 : 1,314,607.8㎡ (감 5,469.4㎡)

* 변경사유 : 도로(중로2-13) 폭원 확장을 위해 녹지 및 도로 일부를 동남권 방사선의 과학 일반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개발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Table with 4 columns: 구 분, 면 적 (㎡)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 비 고. Rows include 산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폐수처리장, 가압장, 배수지,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저류시설.

* 변경사유 : 도로(중로2-13) 폭원 확장을 위해 녹지 및 도로 일부를 동남권 방사선의 과학 일반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개발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과 같음
다. 공공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II.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 1. 산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5. 사업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6.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도시기본계획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 변경
1) 용도지역 : 변경
가)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Table with 4 columns: 구 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Rows include 합 계,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나) 용도지역(변경)결정 사유서

Table with 4 columns: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 면 적 (㎡), 변경사유. Row for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

- 2) 도시계획시설 (변경)
(1) 도로 (변경부문만 게재)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Table with 10 columns: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면적 (㎡) (기정, 증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Table with 10 columns: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929, 대로 3-1, 중로 2-17,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05.11.16). Row for 변경, 대로, 3, 176, 15-27.5, 보조간선 도로, 938(614), 중로 3-424, 대로 3-1,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

②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Table with 4 columns: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Row for 중로2-13, 대로3-176.

- (2) 주차장 (변경없음)
(3) 공원 (변경없음)
(4) 녹지 (변경부문만 게재)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Table with 8 columns: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Row for 변경, 완충녹지6, 녹지, 완충녹지, 반룡리 849 일원.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Table with 4 columns: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Row for 완충녹지6, 완충녹지.

- (5) 유수지 (변경없음)
(6)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7)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8)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Table with 6 columns: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Row for 변경, 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Table with 5 columns: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Row for 변경, -.

-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III. 지형도면 고시

- 1.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Table with 5 columns: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Row for 장안일반산업단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게재생략)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24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집단취락지 36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 행위허가 제한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6. 27 부산광역시청

-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조서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지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Rows include 1 광항, 2 송정, 3 오봉산, 4 영강중리, 5 진목, 6 신포, 7 성산, 8 녹산, 9 상덕·복정·덕계, 10 금호, 11 반백2, 12 작지, 13 신덕, 14 중덕, 15 시만, 16 식만, 17 용동, 18 송산, 19 해포도, 20 산양, 21 금천1, 22 금천2, 23 봉전, 24 가동, 25 사구.

Table with 4 columns: 26 생곡, 27 화전, 28 송백, 29 염막구, 30 변백1, 31 월포, 32 대사3구, 33 칠점, 34 마음, 35 옥포1, 36 옥포2. Columns include 생곡, 화전, 송백, 염막구, 변백1, 월포, 대사3구, 칠점, 마음, 옥포1, 옥포2, 생곡동 198번지 일원, 화전동 443번지 일원, 대저2동 6037번지 일원, 대저2동 5200-1번지 일원, 대저2동 4495번지 일원, 대저2동 4170번지 일원, 강동동 400-1번지 일원, 대저1동 4105-1번지 일원, 생곡동 1064-3번지 일원, 송정동 1290번지 일원, 송정동 710번지 일원, 42,730, 8,540, 33,850, 57,180, 48,080, 62,320, 25,760, 45,070, 27,580, 27,260, 20,650.

나. 제한내용(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허용용도) 중 다음용도

Table with 2 columns: 건축물의 건축, 비고. Row fo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사.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일로부터 1년 6개월 [단 제한기간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일 다음날로 그 효력은 상실]

라. 제한사유

-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수립된 강서구 집단취락지구 36개지역에 제조업소, 창고 등의 난립으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

-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112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학교 교수단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학교의 직제를 개편하고, 사무가 조정된 부서의 명칭을 업무내용에 맞게 변경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담당부서 조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청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학교 교육훈련팀 신설 및 종전의 교육운영과를 인제양 성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나.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를 방역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9조)
다. 본청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함(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기획 및 조정업무 : 아동청소년담당관
○ 가스 관련 업무 등 자원관리업무 : 신성장산업과 → 기간산업과
○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 총괄 : 재난안전담당관
○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 고령화대책과 →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과 → 소방본부
○ 소방학교 교육훈련팀 신설에 따른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 시민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인재양성과 → 교육훈련팀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내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폐업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폐지 - 가축질병 및 혈청검사 : 시험검사실 → 방역과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 구·군 → 상수도사업본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청(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책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2151-5, FAX : 051-888-2149, E-mail : bokyo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